방콕국제학교 (ISB)

학생 보호 정책

(Student Safeguarding Policy)

승인 2015년 4월 21일자

학생 보호 정책이란 우리 학생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육성 환경 경험을 보장하는 ISB의 방안을 말한다. ISB의 교육자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을 하여 학생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직업상 윤리적 책무가 있다.

아동 학대와 방치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다. ISB는 모든 아동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태국아동보호법령(2003년)을 따르고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다.

용어 정의

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는 복잡하며 다양한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SB에서는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고의적인 육체적 손상을 주는 것이다. 육체적 손상은 학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질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증상을 만들어 낼때 일어날 수 있다..

아동 방치는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숙소, 위생 또는 의료제공을 책임을 지는 타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이행하지 않거나 아동의 건강, 안전, 웰빙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로 감독 제공에 실패한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감성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이다. 정서적 학대는 이동의 제한, 모멸, 굴욕, 따돌림(온라인 따돌림 포함), 협박, 위협, 차별, 조롱 또는 비 물리적 적대시 또는 치료의 거부들을 포함한 행동이다.,

성적 학대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일에 대한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성적 활동에 관계시키 위하여 강제, 강요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런 활동들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거나 또는 아동의 성적 이미지의 생산, 성적인 이미지 바라보게 하기, 성적 활동을 보게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의 성적인 행동을 아동에게 권장을 하거나 학대를(온라인상도 포함) 위한 준비로 대비 시키는 것과 같은 비 신체적 활동이 포함된다.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

- 1. ISB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든 적합한 행사/이벤트,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위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 2. ISB는 아이들과 함께 할 고용 예정자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보호정책매뉴얼 (Student Safeguarding Manual) 에 기술된 안전한 채용 사례로 고용한다.
 - a. 모든 ISB 고용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신원 조사는 신규 고용자의 채용과정중 일부며 ISB 자리의 지원자(현직 고용자를 포함)는 채용계약의 일부인 본 정책에 문서상 동의해야 한다.
 - b. 신원 확인, 자격증 진위 여부, 전과에 대한 지발적 신고 요구, 최소한 2명의 보증 추천서가 모든 고 용자에게 수행된다.
- 3 ISB는 파트너 협력조직과 거래하기 전에 아동보호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다.
- 4 명성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아동보호 공인인증을 유지한다

행동프로토콜 및 행동수칙

1. ISB 행동수칙(학생보호규정 참조)은 학생과의 관계, 학생 사진이용과 개인정보,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련한 특정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 1 ISB는 본 정책을 직원, 학부모, 학생에게 매년(필요에 따라) 통지한다.
- 2. 아동 학대 방지와 예방 훈련은 ISB 고용인,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보호정책매뉴얼에 명시된것과 같이 제공된다.
- 3. 보고 절차는 ISB 학생보호정책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관계자에게 매년 통지된다.
- 4 협력 파트너 기관은 계약 거래시 본 정책하에 아동보호와 그들의 책임에 대한 브리프를 받도록 한다

5. 학생과 가족은 아동보호에 대한 ISB의 책무와 만약 아동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보고

- 1. ISB는 아동학대의 조사, 보고, 예방을 할수 있도록 교원과 직원을 위한 아동보호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한다.
- 2. 모든 ISB 고용인과 조합원은 아동 학대나 방치로 의심되는 경우 또한 아이가 그러한 아동 학대나 방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위험에 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ISB 고용인은 교장 (학교 총책임자 Head of School), 학교 부별 (초/중/고) 교장, 카운셀러에게 학교 교외에 상관 없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어떤 경우이든 보고해야 한다

- 3. 아동학대나 방치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한 보고와 후속조치는 본 정책에 (학생보호 매뉴얼) 명시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실행된다. 만약 아동학대나 방치가 학교에서 발생시 의료치료의 필요성 또는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개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방치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태국법령에 의해 요구될때 태국 당국에 신고되도록 한다.
- 4.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방치에 관련된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교내에 인지 필요한 자에게만 공유된다.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방치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거나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매체 또는 어떤한 종류의 정보기술 매체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절대 알려지거나 전파되지 말아야 한다. 비밀유지 법령의 위반은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 5. ISB 직원이 피의자로 보고가 되는 경우에는 ISB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중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체적 조사가 실시 된다.

모니터링과 검토

- 1. 본 정책, 모든 절차,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등은 태국 법령을 준한다.
- 2. 본 정책은 최소한 3년마다 학교 이사회를 통하여 그리고 매년 ISB 경영팀에 의하여 재검토 된다.
- 3. 본 정책의 실행은 학교 이사회에 실행에 대한 효율성을 보고하는 교장 (Head of School) 에 의해 점검된 다

비고 : 본 정책은 2015년 8월 13일자로부터 시행함.